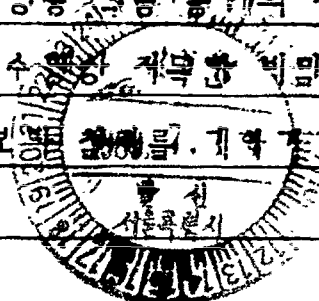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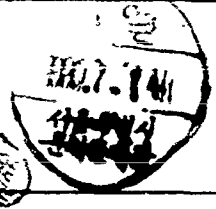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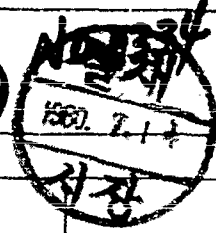


기안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시번호	법무 181.6-	(전화번호 75-6379)	권 전 경 사 항
처리기간	74	시	장
시행일자	80. 7.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시청		7.18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법제계장	
기안책임자	이담주	82.	호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통
제 목	서울특별시 국민(민영) 주택사업계획 심의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 (제1안) 내부 결재		
국민주택 사업계획 심의회의 심의 사항중 각종 공백의 지장 유무 판단을 추가하고 심의업무 관계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준수 의무 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택 사업계획 심의에 보편적 참여를 계획하여 동 규정을 개정코자합니다.			
첨 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 개 정 안 3. 신 구 조 문 대 비 각1부. 끝.		
(제2안)			
수 신	문화공보관		
제 목	시보게자		
별첨 서울특별시 국민(민영) 주택사업계획심의회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시보에 게재 반령할 것.			
첨 부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정서

판인

발송

수신 : 주택행정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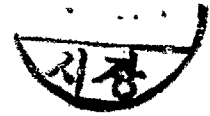
제목 : 혼령 방편

서울특별시 국민(민영) 주택사업 계획 심의회 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방편하였으니 시행에 착오 없도록 하 것.

첨부 : 서울특별시 혼령 제 호 1부. 끝.



제 정 이 유



국민주책사업계획 심의회에 입지심의회 각종 공해의 지장 유무를 판단토록 심의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 업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의 업무상 지득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키 위한 등 규정의 개정임.

주 요 내 용

1. 심의 위원 추가 - 환경국장
2. 심의 사항 추가 - 준공업지역등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공해의 지장 유무 판단
3. 비밀준수 - 심의업무 관계 공무원의 업무수행상 지득한 비밀준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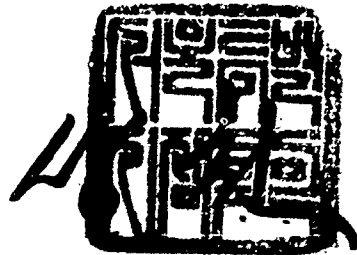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국민(민영) 주택사업 계획심의회 규정
운영규정중 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0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장

정



서울특별시 국민(민영)주택사업 계획심의회 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 **시장**

서울특별시 국민(민영)주택사업 계획심의회 운영 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민영)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입지의 적합 여부를 시장이 결정함에 있어 소관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민영) 주택사업 계획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구성) (2) 위원장은 제2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국장, 비상계획관, 환경국장,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국장, 공원과지국장, 하수국장 및 수도국장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중에서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중 연영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신설하며, 제2항,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준공업지역등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의 지장 유무 판단

(2) 주택국장은 심의결과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 국장으로 부쳐 문서로 수합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심의사항은 시장이 최종결정하므로써 확정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 업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본 대 칙 표

현 행	개정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민영)주택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입지등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국민(민영)주택사업계획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구성) (2) 위원장은 제2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국장,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국장, 수도국장, 녹지국장, 하수국장, 비상계획관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장급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p> <p>제3조 (심의사항)</p> <p>1-8 —(생략)—</p> <p>9. 기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촉진에서 검토</p> <p>— 신설 —</p>	<p>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주택건설 입지의 적합 여부를 시장이 결정함에 있어 소관사항을 사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민영) 주택사업계획 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구성) 위원장은 제2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주택국장, 비상계획관, 환경국장, 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축국장, 공원녹지국장, 하수국장 및 수도국장이 되고 필요시 위원장이 국장 중에서 추가 위촉할 수 있다.</p> <p>제3조 (심의사항 및 처리)</p> <p>1-8 —(생략)—</p> <p>9. 준공업지역등의 기존공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공해의 지장 유무 판단</p> <p>10. 기타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촉진의 검토사항</p> <p>(2) 주택국장은 심의 결과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소관국장으로 부터 문서로 수합하여야 한다.</p>

<p>— 신설 —</p> <p>— 신설 —</p>	<p>(3) 제1항의 심의사항을 심각한 최종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p> <p>제7조의2 (비밀준수)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지극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	---